

「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」 입안계획서

1. 행정규칙명

- 「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」(관세청고시 제2023-31호, 2023. 4. 12.)

2. 개정 사유

- 글로벌 물류시설 유치, 물류업체의 보세창고 신규 운영 상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물동량 기준* 등 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
 - * 해당구역 최근 1년 물동량이 최근 3년 평균물동량의 90% 이상인 경우 신규 특허

3. 주요 개정내용

가.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(제10조제1항·제4항)

-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요건 중 물동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항*에 ‘산업단지** 내에서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경우’ 추가
 - * 보세구역 특허 승계, 국가산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공항만 물류단지, 컨테이너 내륙 물류기지(ICD) 등 // ** 국가·일반·도시첨단 산업단지
- 보세창고를 지상층에만 운영하도록 한 규정 정비 및 건물의 천정·출입문높이·출하장 차양 설치의무 등 폐지

나. 기타 준용법령 개정사항 반영(제5조제3항제2호·제11조제1항제1호)

- (현행)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- (개정)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4. 전문 및 신규 조문대비표 : “별 첨”

5. 의견제출 방법

- 제출처 :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
- 담당자 : 주남룡 주무관(☎042-481-7823)
- 제출기한 : 2023. 10. 24(화)
- 제출방법 : e-mail(kcs010740@korea.kr), fax(042-481-7819),
우편(35208,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,
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)

6. 시행일자 : 공포한 날부터 적용

- (적용례) 제10조 개정사항은 고시 시행일 이후 특허신청 분 부터 적용